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추천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창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추천형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딥테크 원천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신산업 창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 ☐ **지원 대상**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4대 과학기술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 (지원요건 참조)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붙임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 ** 4대 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 ☐ **협약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9월 ~ '27. 2월 예정)
- ☐ **선정 규모** : 25개사 내외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1.2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 내용 >

구분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 기술실증·검증, 투자연계 등 딥테크 특화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세부 지원 내용

□ **세부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내외(최대 1.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214,500천원	150,000천원	21,500천원	43,000천원
(100%)	(70%)	(10%)	(20%)	
창업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 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지원 역량과 중점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 선정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자격** : 신산업 창업 분야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 기업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지 원 자 격	▶ 지원가능 업력 : 2016년 8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세 부 조 건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신청 전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리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함 ★ 요건검토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지원요건** : 과학기술원 기술·인프라를 통해 발굴·육성된 창업기업 중 아래 지원요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여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요건 세부 내용 >

① 산학협력·기술출자형	•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연구·실증 등을 추진했거나 기술을 이전(예정)받은 기업
② BI 입주·성장형	• 과학기술원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제품 고도화, 보육시설 입주(예정), 졸업한 기업
③ 글로벌진출형·오픈이노베이션형	• 과학기술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 또는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진출(예정) 기업
④ 지역 AX·혁신 성장형	• 과학기술원과 지역산업의 AI 전환(AX) 및 기술 연계협력 생태계 참여(예정)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⑤ 투자연계형	• 과학기술원 기술지주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은(예정) 기업
⑥ 그 외 우수 창업기업	•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협력기관 발굴 기업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신청 희망기업은 4대 과학기술원에 지원요건 충족 문의·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의 면책결정 확정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4]에 명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붙임 5]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신청 ·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 2026. 8. 21.(금) ~ 9. 4.(금), 16:00까지

* 창업기업은 추천받은 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선택하여 K-Startup에 신청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접수

○ 추천자(기업)는 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 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추천받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타인 신청 시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추천받은 1개의 과학기술원(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기타 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추천요건 / 지원요건 증빙 * 신청서 및 지원요건 증빙 제출		
④ (해당 시) 공동대표 / 각자대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서류 (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서류 (파일) 별도 첨부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추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 절차:** 요건검토 → 주관기관 선정평가 → 주관기관 심의위원회
→ 주관기관 창업기업 추천 → 전문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추천 일정·결과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안) >

① 우수기업 발굴	② 요건검토·평가	③ 심의위원회	④ 창업기업 추천	⑤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우수기업 발굴	자격기준 검토 및 선정평가	추천 대상자 심의위원회	주관기관별 우수기업 추천	전문기관 사업운영위원회
'26. 8 ~ 9월		'26. 9월		'26. 9월 말

- 추천 창업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천·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평가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심의위원회·추천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 대상 확정을 위한 주관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수 창업기업 추천
최종선정	• 전문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기업 최종선정 및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안내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6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미제출 시, 최종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후보자)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추천(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창업기업 추천 / 평가 결과,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추천 및 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행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추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천(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함

*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추천(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발급 신청 필요
 -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cert.k-startup.go.kr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동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 (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지원요건 중 ‘기술이전창업’ 해당기업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협약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안내에 따라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 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됨에 따라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 (예) 협약종료일이 '27년 1월 31일인 경우 창업기업은 '28년 1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정상 유지하여야 함

* '28년 1월 31일 폐업한 경우 유지 의무 미준수 해당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주관기관명	지역	담당자 연락처
1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	☎ 062-715-6293
			☎ 062-715-6294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	☎ 053-785-1816
			☎ 053-785-1817
3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광역시	☎ 052-217-1382
			☎ 052-217-1387
4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 042-350-4732
			☎ 042-350-4738

붙임 1**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 여부
개 인 기 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 / 파산 - 2년 초과
			부도 / 파산 - 2년 까지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법 인 기 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 / 파산 - 2년 초과
			부도 / 파산 - 2년 까지
	동종전환	성실경영실패자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 / 증여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3**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협약이력 적용 사업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합산하여 총 3회 이상 협약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 창업도약패키지 창구프로그램('19~'20년), 창업도약패키지 마중, 정글, 엔업 프로그램('20년) 협약체결 이력은 창업중심대학 협약 이력에 미포함

'18 ~ '25년 지원사업 기준

① 예비창업패키지 ('25 사내벤처팀 포함)	② 초기창업패키지	③ 창업도약패키지
④ 생애최초 청년창업 ('23, '24)	⑤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23, '24)	⑥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4)
⑦ 창업중심대학 (예비, 초기, 도약기, 레전드50+,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딥테크 특화형)		



협약이력 (총합계)	'26년 창업중심대학 지원
2회 이하	가능
3회 이상	불가

붙임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19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0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2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6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7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2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3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4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참고 1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정의

비목	세목	세세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용역 계약을 통해 시행·제작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등)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 비용 (중고 포함)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인건비	보수	•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의 소속직원 보수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운반비, 보험료, 멘토링비,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 시), 기술 보호비, 기계장치 수리비
		임차료	•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보관료
여비	여비	국내여비	• 창업기업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국내 출장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국외여비	• 창업기업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국외 출장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 창업기업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참고 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 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온라인 신고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우편 신고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